

2026년 제4차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연구원(기간제) 채용 공고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에서는 연구원(기간제)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6월 11일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

1. 선발개요

1] 응시자 개요(총 2명 - 행정분야 기술 2명)

응시 분야 (근무지)	등급	인원	자격요건 및 담당업무	계약기간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 (서울시 서대문구)	기술	1명	■ 자격요건 - 간호학 전공자로 관련 분야 경력자 * 관련분야: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감염병 관리 업무 등 관련 업무 경험자 ■ 담당업무 - 수도권 인수공통감염병 및 진드기·설치류 매개 감염병 발생 감시 및 대응 (담당업무는 부서 사정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채용일 ~'28.1.28. (육아휴직 대체)
수도권질병대응센터 만성질환사업과 (서울시 서대문구)	기술	1명	■ 자격요건 - 보건행정학, 보건의료행정학 등 관련분야 전공자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증 소지자 - 주5일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 등 출장 (숙박) 가능한 자 ■ 담당업무 - 퇴원손상심층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 퇴원손상심층조사 현장조사 수행(의료기관) 및 조사 질 관리 -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입력 및 행정업무 등 (담당업무는 부서 사정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채용일 ~'27.2.6. (육아휴직 대체)

※ 위 공고문의 근무지와 담당업무는 최초 근무지 및 담당업무이며 질병관리청 인력수급
및 근무부서의 업무사정에 따라 향후 직무와 담당업무, 근무처는 변경이 가능

2.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① 응시 자격 공통사항(기준: 서류전형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행령」 제51조 등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만 60세 미만인 자

② 응시 자격 기준

등 급	자 격 기 준
기술연구원 (기간제근로자)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하 소지자 혹은 직무분야 이외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관련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서류전형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③ 우대사항(기준: 원서접수 마감일)

- 법정가점 대상자(증빙자료 첨부 필수)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할 때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 ※ 법정가점은 채용 분야의 채용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때에만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일 때 채용 예정 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3. 보수 및 근로조건

- 보수 : 질병관리청 「2026년 연구원 보수기준표」에 따름
 - 기본급(월) 한계액

구 분	하한액(1호봉)	상한액(25호봉)
기술연구원	2,203,500	3,606,400

- ※ 「질병관리청 공무원 등 근로자 보수체계」에 따라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성과상여금 등 지급 예정
- ※ 초임호봉 확정 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규정」의 유사경력 인정표와 호봉심사위원회 심사에 따라 호봉 확정 예정

- 계약기간
 - (감염병대응과 연구원) 임용일 ~ '28. 1. 28.까지
 - (만성질환사업과 연구원) 임용일 ~ '27. 2. 6.까지
- 근무시간: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40시간, 주5일 근무)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29조 5항에 따라 채용 후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며, 부서장 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계약 종료할 수 있음
- 휴직자가 휴직기간을 연장할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4. 전형방법

1] 서류전형

서류전형				
○ 적극적 서류전형(면접 대상자 3배수)				
계	평가항목			법정가점
	지원분야 경력	행정자격증	분야 적합성	
100점 + 가점	20점	20점	60점	5점,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인원 범위 내에 든 경우라도, 심사위원의 평가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 중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단, 법정가점은 채용 분야의 채용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때에만 적용 				

2] 면접전형

면접전형						
○ 면접전형(최종합격자 1배수, 예비합격자 2배수)						
계	평가항목					법정가점
	정신자세	발전가능성	전문지식	성실성	논리성	
100점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5점,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인원 범위 내에 든 경우라도, 심사위원의 평가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 중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평가점수 70점 이상 평정된 자 중 예비 합격자(2배수) 결정 가능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중 채용시험 가점 기준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취업 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나, 없을 시 면접 심사 재진행 - 평가점수의 각 항목은 최고 20점부터 최하 1점까지 부여함 - 단, 법정가점은 채용 분야의 채용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때에만 적용 						

5.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26. 6. 11.(목) ~ 6. 18.(목)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자의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
서류전형	6. 25.(목) ~ 6. 30.(화)	서류전형 합격자만 해당 부서에서 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서류합격자 발표	7. 3.(금)	
면접전형	7. 8.(수) ~ 7. 10.(금)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7. 22.(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게시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6. 원서접수

- 접수 기간: '26. 6. 11.(목) ~ 6. 18.(목)
- 접수 방법: “질병관리청 채용시스템(kdca.fairy.im)”에서 접수



<질병관리청 채용시스템 접속 QR>

- ※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질병관리청 채용시스템을 이용해 작성하거나, 별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시스템 접수 진행 시 첨부파일 등록 가능)
- ※ (유의사항) 질병관리청 채용시스템 접수 이외의 우편 등의 방법으로서는 접수받지 않음

7. 제출서류

① 공통 제출서류(필수 제출)

- 응시원서 1부 (첨부1)
- 이력서 1부 (첨부2)
- 자기소개서 1부 (첨부3)
- 성적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건)
-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건)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첨부6)
-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첨부7)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첨부8)
- 확인서 1부 (첨부9)

② 해당자 제출서류

- 경력(재직) 증명서 1부 (담당업무 및 발급자 연락처 필수 기재)
 - ※ 담당업무 미기재 및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채용 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행정 분야 자격증 1부 (지원자 중 소지자 제출)
 -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종전 2급 불인정)이 인정되며 제출하지 않은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음
- 주민등록초본(병역관련 사항 기재)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등록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 필) 첨부

8. 안내 및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하여 미확인,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SNS)로 통보 예정
- 응시 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은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으면 재공고할 수 있음
- 시험 시행 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때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추후 제출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채용시스템으로 제출된 응시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해 반환하지 않음
- 임용예정일 '26. 7~8월 중 (예정)
- 기타 문의처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채용담당자(☎02-361-5704)

작성 요령

1. 응시분야 : 시험시행 공고에 의한 응시분야를 기재한다.
 - 번호와 직렬(행정, 연구) 기재
2. 응시등급 : 시험시행 공고에 의한 응시예정직급(책임공무직, 선임공무직, 기술공무직, 책임기간제, 선임기간제, 기술기간제)를 기재한다.
3. 담당업무 : 시험시행 공고에 의한 응시분야별 담당업무를 기재한다.
4. 가산여부 : (법정가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단,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자격기준 : 시험시행 공고에 의한 자격기준을 기재한다.
 - 최종 학위/자격 : 고졸/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산업기사/기사/번호사/변리사/노무사/의사 中 택 1
 - 전공 : 최종 학위/자격의 상세 내용 (예 : 보건학, 전기기사, 예방의학 등)
 - 최종 학위/자격 취득 후 경력 : 최종 학위/자격 취득 후에 유사경력(타기관 및 민간기업)을 연 단위 기재(1년 미만 질사)
 - 최종 학위/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을 산입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6. 성 명 : 한글, 한자 모두 기재한다.
7.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동일하게 기재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전체 기재하지 말 것)
8.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도로명 주소)을 기재한다.
9. 전자우편 : 연락 가능한 E-mail 주소를 기재한다.
10. 휴대전화 : 즉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다.
 - 응시번호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응시표도 내용 기재(응시번호 제외)

[첨부2]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 근로자 채용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분야		응시등급	
성명		생년월일	

나. 가점여부 사항(응시원서와 동일하게 작성)

법정 가점([] 유, [] 무)

다. 학위

순번	학위종류	학위 취득일 (수료 제외)	전공분야
1			
2			
3			

라. 유사경력(최근 순으로 기재)

순번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근무형태	담당업무
1					
2					
3					
4					

마. 자격증

순번	자격증명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1			
2			
3			

바. 병역의무

구분	병역의무 이행 내용(이행, 미필 대상자만 기재)		
	복무기간	전역계급	미필사유
[] 이행 [] 미필 [] 해당없음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성 명 :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3]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 근로자 채용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자 기 소 개 서

응시분야	응시등급	생년월일	성명

1. 지원동기

2.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3. 생활신조와 가치관

4. 직무수행 계획 등

작성 요령

1. 응시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2. A4용지 **2매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3.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성명, 성별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4. 글자체 굴림체, 글자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4]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 근로자 채용 규정 [별지 제4호서식]

학위논문 요약서 []석사 []박사

응시분야	응시등급	생년월일	성명

학위개요

- 학위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심사 년월일 :
- 세부 전공 :

주요 내용 요약

I. 연구 목적

1.
 - 가.
 - 1)
 - 가)
 - (1)
 - (가)

II. 연구 내용

III. 연구 결과의 활용도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작성 요령

1. 학위 건별로 전체 논문 주요내용에 대해 A4용지 3매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2.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한글로 번역하여 작성
3.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제출
4. 글자체 굴림체, 글자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첨부5]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 근로자 채용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연구 실적

□ 연구논문 : 건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연구논문(학위논문 제외)에 한함)

연번	제목	연구자 (참여자수,역학)	게재지명 (권,호)	발표(게재) 연월일	인터넷 확인 가능 URL주소	비고

작성 요령

1. 연구자 : 논문에 기재된 참여자 인원수와 본인의 역할을 기재
 - (예시) 1인, 2인(주저자), 2인(제2저자), 3인(교정저자), 교신저자 등
2. 게재지명 : 논문을 게재한 저널지명을 기재(저널명, 권, 호, 발행연월일)
3. 비고에 SCI, SCIE, KCI 등재 논문 해당 여부 기재(외국어의 경우 초록번역본 제출)
4. 증빙자료 별도 첨부(건당 A4용지 2매이내)
 - 저자, 논문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 초록 포함된 첫페이지 제출
 - 1) 확인용(원본) 1부
 - 2) 블라인드 심사용(본인 이름 포함 나머지 저자명, 소속 및 교신저자 정보 등 삭제) 1부

공무직 · 기간제근로자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 근로자 채용 규정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들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2. ‘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비해당: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 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1, 2, 3-1, 3-2 (모두 충족) ⇒ <u>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u>	<input type="checkbox"/> 해당
1, 2, 4-1, 4-2, 4-3 (모두 충족) ⇒ <u>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u>	<input type="checkbox"/> 해당

※ 해당 기재 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또는 인)

[첨부9]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 근로자 채용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확 인 서

응시분야	응시등급	생년월일	성명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채용 관련 합격취소 사항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에게 강요 및 청탁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경우
3.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4. 대리 면접을 의뢰하거나 대리 면접에 응시한 경우
5.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한 경우
6. 병역, 가점 등 증빙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한 경우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채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질병관리청 또는 소속기관의 채용 응시 자격을 정지하는 것에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